

웨딩보험

(본 약관번역문은 증권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으며 다만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담보 1: 결혼식, 축하연 취소 및 재조정

담보 2: 신부의상 및 예식의상

담보 3: 결혼선물

담보 4: 결혼반지, 하객선물 및 웨딩케이크

담보 5: 결혼차량 및 운송수단

담보 6: 사진 및 비디오

담보 7: 결혼서비스제공자의 도산

담보 8: 출국 실패 및 여행중단

예식 담보기간

동 보험은 1번의 결혼식과 1번의 축하연만을 담보하며 결혼식과 축하연은 그 사이의 기간이 21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21일을 초과할 경우, 먼저 행해진 결혼식만 담보하며, 이후 그 기간을 초과하여 행해진 축하연은 담보하지 않습니다.

1번 이상의 결혼식과 축하연을 계획하시거나 그 사이의 기간이 21일을 초과할 경우, 보험회사에 담보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제한

동 보험은 대한민국 내에서 행해지는 결혼만을 담보합니다.

사고통보

만약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서식을 작성하여 이를 회사에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완성된 서식과 함께 회사가 요청하는 모든 영수증 및 관련서류와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고통보 시에는 반드시 사고를 알게 된 날로부터 31일 이내에 회사에 알려야 하고 담보4의 웨딩케이크와 관련된 사고내용은 48시간 내에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귀하가 위 기한 내에 사고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 사고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준거법

동 보험과 관련된 모든 내용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

주요내용 통보

아래의 내용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증권 - 본 증권을 자세히 읽고 담보사항 및 면책사항 그리고 제반 보험조건을 잘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제조건과 면책사항 - 일반조항은 전체증권에 적용되는 반면, 특정조항과 면책조항은 각 담보별로 적용됨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물사고 - 재물사고에 대한 손해사정은 신품제조달가액이 아닌 사고당시의 시가기준으로 행해집니다.

보상한도액 - 동 보험은 각 담보별로 한도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특정담보에 대해서는 개별물품 및 귀중품에 대한 한도가 설정될 수도 있습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 피보험자는 자신들과 자신들의 재물이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을 경우에 기울인 만큼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공석의 자동차 및 공석의 장소에 대한 사고에 대한 보상은 동 보험증권에 명시되어 있듯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예치금 - 동 보험증권은 해당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가 선납한 예치금에 대해서도 보상을 합니다.

용어의 정의

동 보험증권에서 쓰이는 용어들의 뜻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고 - 특정시간 및 장소에서 다른 원인과 관계없이 직접적이고 즉시적인 외부의 급격하고도 우연한 충격으로 인해 입은 신체상해 및 이로 인한 손해

추가비용 - 원래의 결혼식 및 축하연의 소요비용과 재조정된 결혼식 및 축하연 소요비용과의 차액

악천후 - 여행서비스에 지장을 초래하여 다수 고객의 예식장 도착에 지장을 주는 기상조건

참석하객 - 전문적인 결혼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아닌 신혼부부의 축하하객

신체상해 - 외부의 물체에 의해 급격하게 입은 부상

신부의상 - 결혼식에 임대 혹은 구매하여 신부가 착용하는 의상 및 장신구

예식의상 - (결혼식에) 결혼당사자 및 부모가 임대 혹은 구매한 의상 및 장신구

일가친인척 - 배우자, 동반자, 약혼자, 부모, 의부모, 계부모, 아들, 사위, 의붓아들, 딸, 며느리, 의붓딸, (외)조부모, (외)손자, (외)손녀, 형제, 처남, 자매, 처제 등

결혼당사자 - 둘 중 한명은 대한민국에 반드시 거주하는 신랑과 신부

집(가정) - 대한민국 내에서의 영구적인 주거지

보험기간 - 보험증권상 각 담보별로 명시된 기간

결혼식(웨딩) - 대한민국 내에서 법률적으로 혼인관계를 형성시키는 의식

결혼식일자 - 보험증권 상에 기재된 결혼식이 행해지는 특정 날짜

결혼선물 - 결혼식을 기념하기 위해 결혼당사자에게 증정된 선물(단, 현금 및 마우처 제외)

축하연 - 결혼식 이후 21일 이내에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 개최되는 연회

결혼반지 - 결혼당사자간 결혼식에서 교환되는 반지

결혼서비스 - 결혼을 위해 전통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전문사진, 전문비디오 촬영, 화환, 리무진 등 렌터카, 하객숙박제공, 출장사회, 예식장, 웨딩케이크, 예식의상, 출장요리, 결혼식 및 축하연에 계약된 음악인, 컨설팅업체(consulting company incl. a consultant) 등을 의미(단, 결혼식 선물 제공자는 제외)

회사 - 롯데손해보험 및 그 대리인

귀하 / 피보험자 - 보험증권상 기재된 결혼당사자. 단, 특정 담보에서는 결혼당사자의 친척을 포함

담보 1: 결혼식, 축하연 취소 및 재조정

PART A - 취소

회사는 증권상 기재된 보상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아래의 사유로 인해 직접적으로 야기된 결혼식 및 축하연의 피할 수 없는 취소로 인한 예약되었으나 사용하지 못한 예식의상, 화환, 사진, 비디오, 출장요리, 운송수단, 숙박시설 및 기타 결혼서비스업체의 반환불가 비용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 a.** 전염병의 발병, 결혼식장의 파손(외부차양을 포함), 결혼식장에서의 살인 및 자살, 관련 인가에 의한 결혼식장 및 출장요리업체의 폐쇄로 인하여 예약된 결혼식장 및 출장요리업체를 이용하지 못하여 피보험자의 결혼식 및 축하연을 진행하기가 불가능한 경우
- b.** 결혼당사자 및 일가친인척의 상해, 상해사망으로 결혼식의 진행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 c.** 예약되고 예약금을 선납하였으나 전문 결혼서비스업자가 행사 당일 예기치 못하게 나타나지 않은 경우
- d.** 신부의상 또는 예식의상의 우연한 완전 파손으로 인하여 착의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대체의상의 구입 및 대여가 불가능한 경우
- e.** 결혼당사자가 보험증서의 발급 후 최소 8주가 경과한 뒤에 정리해고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자격이 생긴 경우
- f.** 보험기간 동안 결혼당사자중 결혼식을 위해 미리 허가 받은 군인의 휴가취소 및 구급대원, 경찰(해양경찰을 포함) 및 소방대원의 긴급한 의무활동으로 인하여 예기되지 않은 취소의 경우
- g.** 오직 실내예식인 경우에 한하여 악천후로 인하여 대다수의 하객 및 친인척이 결혼식장 및 축하연장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이 경우 보험의 효력은 보험료 납부 14일후부터 시작됩니다)

PART B - 재조정

위 PART A에 기재된 사유로 결혼식 및 축하연이 취소된 경우, 원래 비용규모와 비슷한 기준에서 결혼식 및 축하연의 재조정에 따른 합리적인 비용을 보험증서에 기입된 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담보 1하에서의 특별 보상조건

결혼식 재조정에 앞서 모든 추가비용은 회사에 미리 통보되어야 합니다.

담보 1하에서의 보험기간

본 담보의 효력개시기간은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시작하여 결혼식 및 축하연이 끝나거나 사고통보가 이루어지는 시점 중 빠른 시점에서 종료합니다.

담보 1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

- a. 어느 상대방으로부터 이미 받은 금전적 손실(단, 초과분은 일반 보험조건 8의 비례보상에 의해 보상합니다)
- b. 직간접 여부를 불문하고 회사에 통보되거나 인정되지 않은 현재 건강상태로 발생한 손해
- c. 직간접 여부를 불문하고 아래의 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
 - i. 정부의 규제 및 금지법률
 - ii. 파업 및 노동쟁의
 - iii. 1(e)에 적시된 내용 이외의 실업
- d. 1(a & e)에 적시된 사유 이외에 발생한 결혼당사자의 재정적 상황으로 인한 손해
- e. 1(f)에 적시된 경우 외에 결혼당사자가 사용자의 결혼에 따른 휴가를 얻지 못한 경우
- f. 결혼서약을 거부하거나 적법한 결혼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따르지 못하거나 적절한 법적 서류를 취득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고
- g. 필요한 경우 결혼식 및 축하연을 취소하거나 재조정하여야 함에도 결혼 상품 및 서비스 제공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한 사고
- h.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열리는 결혼식과 관련한 여행, 숙박 계약의 취소 및 재조정과 관련된 손해
- i. 재조정되는 결혼식에 앞서 미리 추가적인 비용에 대해서 회사에 통보하거나 승인 받지 않은 경우
- j. 임신으로 인한 결혼식의 취소
- k.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하지 않은 결혼당사자의 불안장애, 스트레스 및 우울증
- l. 할인을 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지급한 금액

다른 사항은 일반 보험조건 및 일반 면책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보 2: 신부의상 및 예식의상

회사는 증권상 기재된 보상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a. 결혼식 3개월 전부터 결혼식 동안과 전문사진가가 결혼식 사진을 찍은 직후에 일가친인척 및 결혼당사자가 보관하고 있던 신부의상이 손해 및 손상을 입은 경우. 단, 대여한 신부의상의 경우 결혼식 시작부터 48시간까지 담보가 연장됩니다.
- b. 결혼식 48시간 전부터 결혼식 동안과 전문사진가가 결혼식 사진을 찍은 직후에

예식의상이 손해 및 손상을 입은 경우. 단, 대여한 예식의상의 경우 결혼식 시작부터 48시간까지 담보가 연장됩니다.

중요사항

보상 시 의상에 대한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야외에서 사진이 촬영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담보 2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

- a. 어느 상대방으로부터 이미 받은 금전적 손실(단, 초과분은 일반 보험조건 8의 비례보상에 의해 보상합니다)
- b. (손상의 경우를 제외하고) 사고발생 후 지체없이 경찰에 사건신고를 하지 않은 손해

다른 사항은 일반 보험조건 및 일반 면책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보 3: 결혼선물

회사는 보상한도액 내에서 결혼당사자 및 일가친인척에 의해 운송되거나 보관중인 혹은 결혼식장에 전시되었던 결혼선물(단, 현금 및 바우처 제외)이 화재 혹은 도난에 의해 손해 및 손상을 입은 경우 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험가입시점에 회사에 통보되고 인정된 결혼선물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동 담보는 결혼식 7일전부터 시작되어 결혼식 후 24시간 혹은 사고접수가 이루어진 시점 중 빠른 시점에 종료됩니다.

담보 3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

- a. (손상의 경우를 제외하고) 사고발생 후 지체없이 경찰에 사건신고를 하지 않은 손해
- b. 어느 상대방으로부터 이미 받은 금전적 손실(단, 초과분은 일반 보험조건 8의 비례보상에 의해 보상합니다)

다른 사항은 일반 보험조건 및 일반 면책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보 4: 결혼반지, 하객선물 및 웨딩케이크

회사는 보상한도액 내에서 아래 i 혹은 ii에 명시된 기간 동안 결혼반지(단, 현금으로 구입시 현금영수증 소지), 하객선물 그리고 웨딩케이크에 발생한 화재 혹은 도난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담보 4의 담보기간

- i. 결혼반지와 하객선물의 경우 결혼식 7일 전부터 시작되어 결혼식 후 24시간 혹은 사고접수가 이루어진 시점 중 빠른 시점에 종료됩니다.
- ii. 웨딩케이크의 경우 결혼식 36시간 전부터 시작되어 결혼식 후 혹은 사고접수가 이루어진 시점 중 빠른 시점에 종료됩니다.

담보4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

- a. 사고발생 후 지체없이 경찰에 사건신고를 하지 않은 손해
- b. 어느 상대방으로부터 이미 받은 금전적 손실(단, 초과분은 일반 보험조건 8의 비례보상에 의해 보상합니다)
- c. 담보 1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

다른 사항은 일반 보험조건 및 일반 면책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보 5: 결혼차량 및 운송수단

회사는 보상한도액 내에서 결혼식 운송계약을 맺은 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차량의 고장 또는 사고가 나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원래 비용규모와 비슷한 기준의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결혼식 운송계약은 결혼식장에 참석하기 위해 결혼당사자 및 하객이 탑승한 차량을 위한 국내의 운송계약을 말하며, 렌탈·임대 또는 운송·여행업자로 사업자 등록된 업체와의 계약을 말합니다.

동 담보는 보험료납입시점부터 시작하여 결혼식 혹은 축하연 종료 혹은 사고통보가 이루어지는 시점 중 빠른 시점에서 종료됩니다.

담보 5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

- a. 어느 상대방으로부터 이미 받은 금전적 손실(단, 초과분은 일반 보험조건 8의 비례보상에 의해 보상합니다)
- b. 담보 1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
- c. 서면으로 하지 아니한 운송계약
- d. 원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이행시키도록 하는 데 발생하는 추가비용
- e. 서비스제공자의 도산

다른 사항은 일반 보험조건 및 일반 면책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보 6: 사진 및 비디오

회사는 동 담보의 보상한도액 내에서 아래의 사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결혼사진 혹은 비디오를 재촬영하는데 쓰인 예기치 못한 비용이나 환급받지 못한 금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 a. 계약된 전문 사진작가 혹은 비디오작가가 어떤 이유로든 촬영현장에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
- b. 최종인화본이 복사되기 전 원본 현상필름 혹은 사진이 저장된 원본 디지털미디어가

손실이나 손상을 입은 경우

동 담보의 담보기간은 보험료납입시점부터 시작하여 결혼식일로부터 90일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진 혹은 비디오가 도착하는 날 혹은 사고접수가 이루어진 날 중 빠른 시점에서 끝납니다.

중요사항

위 a와 b에 관해서는 계약된 전문 사진작가나 비디오작가가 원계약 금액의 75% 이상을 수령하고도 계약을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담보6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

- a. 어느 상대방으로부터 이미 받은 금전적 손실(단, 초과분은 일반 보험조건 8의 비례보상에 의해 보상합니다)
- b. 담보 1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
- c. 원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이행시키도록 하는 데 발생하는 추가비용
- d. 서면으로 하지 아니한 서비스계약
- e. 서비스제공자의 도산

다른 사항은 일반 보험조건 및 일반 면책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보 7: 결혼서비스제공자의 도산

회사는 동 담보의 보상한도액 내에서 아래의 경우 예약된 서비스제공자의 도산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도산이란 단순히 지급불능상태가 아닌 법적 절차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된 파산 또는 폐업신청 상태를 말합니다.

- a. 예약조건에 따라 예치한 금액의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 b. 다른 서비스업자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추가적 비용

동 담보의 담보기간은 보험료납입시점부터 14일 후 시작되어 결혼식 후 혹은 사고접수가 이루어진 시점 중 빠른 시점에 종료됩니다.

담보 7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

- a. 어느 상대방으로부터 이미 받은 금전적 손실(단, 초과분은 일반 보험조건 8의 비례보상에 의해 보상합니다)
- b. 원서비스제공자가 도산하지 않도록 하는 데 발생하는 추가비용
- c. 보험가입시점에 서비스제공자의 재정상황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인지하고

있었거나 공개언론에 공표된 상황인 경우

- d. 할인을 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납입한 추가금액
- e. 서면계약을 하지 않은 서비스제공자의 도산으로 인한 손해

다른 사항은 일반 보험조건 및 일반 면책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보 8: 출국 실패 및 여행중단

회사는 동 담보의 보상한도액 내에서 아래의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여행 및 숙박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출국 실패

예약된 일정표상 도착하여야 할 출발점에 아래의 사유로 인해 탑승시간보다 늦게 도착하였을 때 결혼당사자가 신혼여행 목적지로 이동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 a. 공공운송의 중지
- b. 탑승차량의 고장으로 인한 지연

재해

아래의 사유로 인해 결혼당사자가 신혼여행을 계속하기 위해 예약된 숙박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거나 여행을 계속할 수 없어 집(가정)으로 돌아와야 하는 경우에 그 비용을 보상합니다.

- a. 화재, 번개 혹은 폭발로 인해 예약한 숙박장소에서 숙박이 불가능한 경우
- b. 예약한 숙박장소의 지역에서 전염병이 발병하거나 현지 당국이 피난 명령을 내렸을 경우
- c. 태풍, 폭풍 혹은 다른 자연재해가 안전을 위협하여 관계당국이 소개명령을 내리거나 예약된 숙박장소에서 거주가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대체 여행

아래의 사유로 인해 예약된 여행편이 취소되거나 일정표상의 시간보다 24시간 이상 지연되는 경우 결혼당사자의 신혼여행 목적지로 이동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 a. 출국장소가 심대한 화재, 폭풍 혹은 홍수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 b. 노동쟁의 혹은 파업
- c. 악천후
- d. 국제열차 혹은 선박의 고장
- e. 기계적 혹은 구조적 결함으로 인한 항공기의 계류
- f. 여행목적지의 관계당국의 지시로 인한 공항, 항구 혹은 기차역의 폐쇄 혹은 대중교통의 중지
- g. 교통서비스업체의 도산

담보 8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

- a. 보험증권상의 자기부담금
- b. 신혼여행을 예약할 당시 시작되었거나 알려졌던 파업으로 인한 손해
- c. 예약여행지의 관계당국이 안전하여 숙박이 가능하다고 발표함에도 불구하고 결혼당사자의 판단으로 머물지 않는 경우
- d. 법적으로 배상책임 있는 여행사, 항공사, 호텔 혹은 다른 서비스제공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
- e. 다른 상대방이 가입한 (보증)보험 혹은 이와 유사한 것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
- f. 원래 예약했던 것보다 상급의 숙소 혹은 교통편을 이용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한 비용
- g. 여행 중 통상 발생하는 비용
- h. 외교부 및 관련기관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여행을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 i. 여행 전에 해당 지역에 대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
- j. 화산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 k. 아래의 같은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손해
 - i. 결혼당사자가 애초에 최초 탑승수속 시간보다 먼저 도착하려고 계획했으며 항공사, 경찰 또는 공항공사 등 관계당국의 지연사유 및 사실을 인정하는 서면서류를 제출함.
 - ii. 차량고장 혹은 사고로 인해 지연된 경우 정비소의 계산서를 제출함.
 - iii. 재해로 인한 사고일 경우 관계당국 혹은 숙박업자로부터 재해의 원인, 성질 및 지속기간을 확인하는 서류를 받아 제출함.
 - iv. 결혼당사자가 동 담보에 해당되는 사고로 인해 귀국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회사가 인정한 여행업자가 있는 경우 원래 주선한 여행업자가 아닌 보험회사가 인정한 업자를 먼저 접촉함.

다른 사항은 일반 보험조건 및 일반 면책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확장담보 : 취소확장담보

이 담보는 추가보험료가 납입되어 가입증명서에 표시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회사는 담보1의 담보를 보험가입증명서상의 금액까지 확대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담보1과 동일합니다.

다른 사항은 일반 보험조건 및 일반 면책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면책사항

1. 전쟁, 침략, 외국의 적대행위, 테러, 내전, 혁명, 쿠데타, 국유화·징발 및 정부의 지시에 의한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
2. 직간접 여부를 불문하고 비행체의 압력파로 인한 손해
3. 피보험자의 자해로 인한 부상 및 질병, 유기용제 중독, 알코올 중독, (의사의 처방에 따르지 않은) 약물사용 혹은 불필요한 위험에의 자기노출(인명구조의 경우는 제외) 등으로 인한 손해
4. 직간접 여부를 불문하고 핵물질 및 방사능으로 인한 손해
5. 피보험자 자신의 행위나 실수로 인하여 부상 및 손해가 늘어난 손해
6. 담보에 속하지 않는 재물손해
7. 보험시기 종료 후 31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은 손해 (담보 6 등은 약관에 따라 별도 적용)
8. 모든 종류의 결과적 손해
9. 직간접 여부를 불문하고 성병과 관련한 모든 손해
10. 법령 위반으로 인한 손해
11. 결혼당사자 및 결혼계획에 중요한 사람이 불법행위를 행하거나 기소가 진행되는

결과로 인한 손해

12. 의사의 권고에 반하여 행동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13. 대한민국 거주자가 아닌 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인정되지 않는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

14. 결혼식 및 축하연에 초대된 하객의 악의적 파괴행위로 인한 손해

15. 결혼식 및 축하연 관련 예약 후에 일어난 사고이나 보험가입일 이전에 발생한 사고

16. 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보험금 수령 및 수령권을 요구하는 행위

17. 직간접 여부를 불문하고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닌 오염 및 공해와 관련된 사고(한 사고로 인한 오염 및 공해는 모두 그 사고 당시 일어난 것으로 간주합니다)

18. 명백한 물리력을 사용하여 출입한 흔적이 없는 탑승자가 없는 차량 및 사람이 없는 장소에서 일어난 손해 혹은 도난

19. 명백한 물리력을 사용하여 출입한 흔적이 없는 시건장치된 장소에서 일어난 손해 혹은 도난

20. 공기주입식 놀이기구 혹은 매트리스 및 화약류 또는 불꽃점화류 장치 또는 그 효과로 인한 손해

21.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한 재물 손해

i. 점진적 마모 / 손실, 내재적 결함

ii. 부패, 곰팡이, 녹, 부식, 동결, 토양손실

iii. 벌레, 해충, 나방 등 곤충류

iv. 염색, 수선

v. 전기적 / 기계적 고장

vi. 조정실수, 디자인결함, 재질결함

vii. 점진적 악화, 시장가치 하락

viii. 기후조건

ix. 축소 혹은 변색

x. 몰수, 압류 혹은 청산절차, 수리

xi. 망실(忘失), 분실(紛失)

22. 직간접 여부를 불문하고 백신접종과 관련된 손해

23. 증거가 없거나 입증되지 않는 사고의 손해

24. 전염병(SARS, 비정형성 폐렴, 조류독감, 신종플루 등) 또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전염병으로 인정한 인플루엔자의 변형

25. 직간접 여부를 불문하고 테러행위에 기인한 모든 손해. 테러행위는 일인 또는 다수인의 무리가 단독으로 또는 단체나 정부를 대신하거나 관련하여 정치적, 종교적, 이데올로기의 목적 등 유사한 목적에서 무력, 폭력을 사용하거나 위협(이것들로 국한하지는 아니합니다)하는 행위를 말하며 정부나 대중 또는 대중의 일부를 공포에 빠뜨릴 목적으로 행한 폭력을 포함함. 면책의 경우 입증책임은 피보험자에게 있으며, 이 조항의 일부가 무효이거나 실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이외의 부분은 효력을 지속함.

26. 직간접 여부를 불문하고 병원성, 유독성 생화학물질의 악의적인 사용에 기인한 모든 손해

27. 야외 결혼식 및 축하연 시 악천후

28. 직간접 여부를 불문하고 다음에 기인한 모든 손해.

i. 회사와 협의되지 않은 현재의 신체적, 정신적, 의학적 상태

ii. 질병사망,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

일반 보험조건

1.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회사에 위험의 인수 결정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미고지 및 불성실 고지 시는 보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보험기간 중 위험의 변동이 생길 시에는 회사는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험경과기간에 따른 일할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할 시에는 즉시 회사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2.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가능한 즉시 아무리 늦더라도 사고 후 최소한 31일 이내에 회사에 서면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사고 및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보험사가 요청하는 자료를 피보험자의 비용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누구도 회사를 대신하여 보험금 지급에 대한 책임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피보험자의 이름으로 사고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법적 조치를 할 권리가 있으며 회사의 판단으로 적절한 자에게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4. 회사의 보상책임의 전제조건으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리고 이를 대신하여 행동하는 자들은 동 보험의 제반조건을 준수하고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5. 보험기간이 시작되면 보험료의 환급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6. 귀하는 항상 담보가 되는 재물을 최선을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7. 회사의 보상책임은 귀하의 성실한 보험조건 준수와 진실한 진술과 연관됩니다. 귀하나 귀하를 대신하여 누구라도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동 보험은 무효가 되고 보험료의 환급도 없습니다.
8. 사고 당시 동 보험과 유사한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 수령이 가능한 경우에는 비례보상을 하여 드립니다.
9. 동 보험에 대한 귀하의 효력은 양도할 수 없습니다.
10. 회사의 보상책임은 각 담보의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11. 회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2.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귀하는 서비스제공업자와의 의무권리사항이 명시되어 있거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13. 피보험자는 재정적 손실에 대해서 동 증권의 각 담보 중 1개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14. 동 증권은 3자의 동의 없이 무효화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15. 결혼당사자 중 최소 1인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16. 담보 1, 담보 2, 담보 6은 보험계약자와 제휴된 웨딩서비스제공업자가 ‘일괄 제공’하는 계약만 담보하며, 피보험자가 별도로 체결한 계약은 담보하지 않습니다.